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광주이삭요양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주민번호		연 락 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12%경감대상자 ☐ 8%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 설 명	광주이삭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시 설 장	대표 전 애 란 (인)	연 락 처	(062) 575 - 6100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 29번길 7-2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주민번호		연 락 처	
	주 소			
응급상황 발생 시 2순위 보호자 연락처				
성 명		관 계		연 락 처
성 명		관 계		연 락 처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년 월 일

‘갑’의 공단 등급인정 유효기간일까지

② ①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매년 공단의 수가 변동에 따른 급여비용 또는 비급여비용의 변경에 대해 ‘을’이 그 내용을 사전 통지한다. 그 이후 시행일까지 ‘갑 또는 병’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 비용의 급여비용변경내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4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다음 공단등급인정 만료일까지 자동연장 된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을’은 이를 즉시 반영하며 ‘갑’ 또는 ‘병’에게 사전 안내해 주기로 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소 예정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3조 【 입소 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 이용료는 익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 일 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계좌이체 입금통장 : 수 협 은 행: 0062-0575-6101

예 금 주 : 광주이삭요양원

- ④ 입소자 성명: _____ 등급: _____ 월 이용료는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식재료비(원) 총 (원)
- ⑤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매와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⑥ 보호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을’은 ‘갑’ 또는 ‘병’에게 매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의 상세명세를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한다.

< 시설 급 여 > 본 인 부 담 금

(보 건 복 지 부 고 시 : 2025.01.01)

장기요양 등급	1일기준	30일 기준 (요양보호사 인원 배치 2.1:1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대상자		합계금액 (본인부담액+식재료비+간식비)			
			12%	8%	20%	12%	8%	
1등급	90,450원	542,700	325,620	217,080	878,700	661,620	553,080	면제
2등급	83,910원	503,460	302,070	201,380	839,460	638,070	537,380	
3-5등급	79,240원	475,440	285,260	190,170	811,440	621,260	526,170	

비급여	
식재료비(1식)	3,500*3 = 10,500원 X 30일 = 315,000원
간식비	700원 X 30일 = 21,000원
이/미용료	무료
협력병원	광주연세요양병원, 광주센트럴병원 등
이 항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12%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과 불가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이를 전 외박 예약자에 한 해 식대 공제) 서명 : _____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 (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계약자 의무】‘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개인물품 고장 시 수리비용 부담(전자기기 및 휴대폰 등)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후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사전 통지함.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갑’의 공격적 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되거나 ‘갑’의 심한 치매 증상 등으로 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을’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제6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할 때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3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갑’과 ‘병’은 ‘을’에게 퇴소예정 14일 전까지 퇴소 의사를 알리고 퇴소 시 시설이용료 및 약제비 등에 대하여 정산 후 퇴소기로 한다. **서명 :** _____

제7조 【 입소물품 】 ‘갑’과 ‘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 ① 기관에서는 화재사고의 우려가 있는 개인 전열 기구 등의 물품은 반입을 제한한다.
또한, 입소자의 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날카로운 용품(칼, 효자손, 바늘 등)은 소지할 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입소시 또는 외출 후 복귀시 현금반입은 반드시 기관과 협의한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갑과 병의 협의로 변경 가능)
- ② ‘갑’과 ‘병’은 외출·외박 시 최소 이틀 전에 ‘을’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원 포함 외박 10일까지는 5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납부해야 하며, 외박 1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입소자 수에서 제외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건강이나 심신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건강 진단을 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병’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 또는 월 1회 이상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추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갑’의 입소와 동시에 ‘을’은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기록 후 적절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건강 유지 또는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 징후 확인, 투약 관리, 욕창(예방) 관리, 낙상 방지 등의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건강 이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작업)치료, 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의 내역을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대처가 어려울 때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때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단 ‘병’과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그 비용은 추후에 ‘병’과 정산한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 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 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생활실의 배정 】‘갑’의 생활실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르고 입소 후 ‘갑’의 건강 상태, 수발조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기로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로 갈음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이용자 및 계약자가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한 기록을 공개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의 지병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외출. 외박 중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갑’의 시설이용 등급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설이용료는 등급 외의 금액을 적용하며, 시설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의 지병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외출, 외박 중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갑’의 시설이용 등급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설이용료는 등급 외의 금액을 적용하며, 시설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제20조【신체구속에 대한 동의】

1. 절박성 :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크다.
2. 비대체성 : 신체구속 외에 대체할 만한 돌봄 또는 간호의 방법이 없다.
3. 일시성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 (인)

‘을’ 이삭요양원
시 설 대 표 : 전 애 란 (인)

‘병’ 대리인(보호자) : (인)

이삭요양원 입소 서약서

○ 어르신 성 명 :

○ 입소일 :

년

월

일

1. 입소 중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① 본 원 직원들의 주위와 관찰에도 불구하고 간혹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치 못했던 골절이나 출혈 (예: 뇌출혈,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험율이 높은 노인성 질환 대상 어르신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 혼자 거동이 불편함
-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음
- 저혈압
- 시력 저하 또는 시야 장애
-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어지럼증, 기운 없음, 졸린 상태 등을 경험하는 경우
- 사지 강직이 심한 경우
- 이전에 낙상하거나 미끄러져넘어진 경험이 있음
- 뇌졸중(뇌경색 및 뇌출혈), 경련성 질환 및 기타
- 정신과 약, 안정제 계통의 약물 복용 중인 환자
-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②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이면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 뇌졸중 등)을 앓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 저혈압 및 쇼크
- 갑작스러운 저산소증
- 삼킨 장애로 인한 식사 도중 갑작스런 질식사 및 폐 질환
- 노졸중의 재발로 인한 의식 장애, 언어장애, 마비, 감각장애 또는 어지럼증 등
- 기존 질환의 악화
-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새로운 중 질환

③ 어르신들은 고령과 만성 질환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 요로감염, 심한 욕창, 장염, 등의 염증성 질환 및 패혈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소독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노환과 관련된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2. 위와 같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는 언제든지 위급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이 경우 응급상황에서 선 조치 후 통보받는 것에 대해 양해하고 동의함.

3. 입소자 어르신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복합 질환자로서 환경의 변화, 장거리 이동 등의 요인으로 입소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입소 생활 중 아무런 외부요인 없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이로 인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4. 입소 어르신에 대해 요양원이 선량한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부상, 또는 어르신 자신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5. 입소자가 입원하였을 때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함.

6. 각종 응급상황 및 임종의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며 어르신의 존엄사를 방해하는 **‘심폐소생술의 불필요에 대한 동의서 (DNR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권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저 질환의 악화나 기타 응급상황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에 시행될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으신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원하는 병원이 있으시면 자세히 기록해주세요.		
2	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동행하실 가족분을 기록해주세요. (관계, 성명, 연락처)		
3	만일,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간병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4	심폐소생술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요()
5	임종징후를 보일 때 생명 연장 조치 시술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요()

7. 상기 입소 어르신은 노인의 특성상 기력과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요양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서약함.

1.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후유증
2. 이물질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3. 폐렴, 요로 감염증, 욕창성 궤양 등의 감염으로 인한 임종
4. 배회로 인한 이탈
5. 자해
6.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사고나 노환으로 인한 임종
7. 특이 체질로 인한 약물 부작용

8. 사후 신병인수 서약서

어르신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주소	상동	보호자연락처	010

상기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신병 인수할 것을 서약하며 어르신 보호자와의 연락이 거절, 또는 두절되는 경우 입소 어르신의 사후신병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주이삭요양원에 위임하기로 함.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인 또는 서명)

이용자와의 관계

보호자 생년월일

주 소 상동

진료 및 약 처방 위임장

☐ 입 소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질 병 명 :

상기 입소 어르신은 여러 가지 질환과 합병증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의료이용을 수행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자가 직접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병원 진료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수행해야 할 모든 권한을 광주이삭요양원에 위임하되, 요양원에서 선량한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상기 입소 어르신을 모시고 의료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악화 또는 장애 등에 대해서 광주이삭요양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요양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외)

20 년 월 일

위임자 (보호자) :

(서명)

안전사고 예방(신체구속)을 위한 동의서

광주이삭요양원에서는 기관 내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_____ 어르신의 상태가 아래 '제재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①,②,③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신체구속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하거나 현저히 완화될 경우 지체 없이 신체구속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 ① 절박성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 처치를 위한 경우
- ② 비대체성 :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는 경우
- ③ 일시성 :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피부를 긁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대상자의 피부 손상방지 ▶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방지 ▶ 타인에 대한 폭력 등 공격적 문제행동으로부터 다른 어르신 또는 종사자 보호 ▶ 치료를 위해 필요한 tube, 도뇨관 등의 중요 부착물을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
------------------	--

☐ 휠체어 안전띠	시기: 휠체어 사용 시 / 사유: 낙상 예방 목적 / 방법: 휠체어 안전띠
☐ 침대난간	시기: 침대 이용 시 / 사유: 낙상 예방 목적 / 방법: 침대 난간사용
☐ 식판 보호대	시기: 간식 및 개별 프로그램 진행 시 / 사유: 개별 도구 지지대 역할 / 방법: 휠체어에 고정하여 사용
☐ 신체 억제대	시기: 비위관, 유치도뇨관 등 사용 시 / 사유: 생명위험 예방 / 방법: 의사소견에 따라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	
-------------------	--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자필 동의 : _____)

20 년 월 일

이 용 자 명 : _____ (인)

보 호 자 명 : _____ (인)

관 계 : _____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소자 성명 :

☐ 생년월일 :

1. 상기 입소자는 아래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대상 정보	수집정보의 활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계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대상자 정보제공 - 관계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등 서비스 질 향상에 활용

2. 본 시설에서 프로그램 참여 및 행사 참여시 촬영하는 사진(영상)과 활동작품을 원내 게시와 광주이삭요양원 밴드 등 SNS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상기 본인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에 대하여 이성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시설에서는 이성의 어르신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4. 광주이삭요양원에서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더 나은 안전을 위하여 어르신의 상태가 아래 ①, ②, ③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소자(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① 혐오감 : 다른 입소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개인 의복

② 배회성 : 배회성이 강하여 내방한 타 보호자와 섞여 요양원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③ 특별사유 : 피부질환 등으로 개인 옷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간호기록지 또는 욕구평가기록지 확인)

단체복 착용에 동의
하시는 보호자 의견

20 년 월 일

위임자 (보호자) :

(서명)

광주이삭요양원 귀중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계단 ☒ 옥상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입소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소자, 보호자 대상]

입소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입소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 광주이삭요양원

- 동의 기간: 20 . . . ~ 20 . . . / (퇴소일) 까지

- 보호자 연락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소자 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입소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 광주이삭요양원
- 동의 기간: 20 . . . ~ 20 . . . / (퇴소일)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낙상 및 안전사고 관련 동의서

1. 갑(보호자)과 을(요양원)은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최대한 신체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에 동의함
2. 신체활동의 증가는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다 음 -

- 가. 을(요양원)은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낙상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임**
- 나. 을(요양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조성과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낙상예방 교육을 통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함**
- 다. 갑(보호자)은 을(요양원)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낙상사고에 대해서는 을(요양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2025. . .

이용자 () 의 보호자: (서명)

광주이삭요양원 귀중

 **광주이삭요양원**
Nursing Home Isak